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96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6.

발 의 자:이원택・임미애・안호영

어기구・송옥주・최민희

김승원 • 박희승 • 이병진

윤준병 · 서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비료생산업자·비료수입업자·비료사용자(이하 "비료생산업자등"이라 함)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·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·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·사용량을 1,000m²당 3,750킬로그램 또는 3,750리터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최대 공급량·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지적이 있음.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%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~2%, 가축분뇨 발효액은 0.1~0.2%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.

이에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

·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·사용량의 기준 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2제3항). 법률 제 호

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2제3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"를 "단위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·사용량은 비료의 종 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9조의2(비료의 관리 및 신고	제19조의2(비료의 관리 및 신고		
의무) ①・② (생 략)	의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비료생산업자・비료수입업	③		
자・비료사용자는 제5항에 따			
라 판매・유통・공급 또는 사			
용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			
비료를 공급・사용하는 경우	<u>단위</u>		
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</u>			
<u>단위</u>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			
공급량・사용량을 초과하여서	이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		
는 아니 된다. <후단 신설>	대 비료 공급량・사용량은 비		
	료의 종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		
	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 등을		
	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		
	로 정한다.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